



< 수시 공시 >

2013.06.12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| 구분 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발생일 설정잔액(원) | 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 | 기준가격 | 50 억 미만 시작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 | 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 | 1,146,766,305 | 1,092,059,825 | 952.30 | 2011.05.12 |
| 2 | 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1형 | 50,690,632 | 47,577,445 | 938.58 | 2011.05.12 |
| 3 | 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2형 | 131,306,336 | 128,560,773 | 979.09 | 2011.05.12 |
| 4 | 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3형 | 514,060,217 | 503,697,594 | 979.84 | 2011.05.12 |
| 5 | 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e형 | 18,640,264 | 17,722,606 | 950.77 | 2011.05.12 |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3.06.11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